

2024년 기업을 위한 알기쉬운 지방세 해설

* 본 자료는 2024년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지난연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목 차

I. 지방세	4
1. 지방세 개요	5
2. 용어 설명	6
3. 지방세 체계	7
4. 세목별 납부시기	8
II. 주요 세목별 해설	9
1. 취득세	10
2. 등록면허세	19
3. 주민세	22
4. 지방소득세	28
5. 재산세	31
6. 자동차세	34
7. 지방소비세	35
III. 2024년 개정 지방세법	36
IV.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39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40
2.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면	42
3.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43
4. 감면관련 유권해석 사례	44

V. 세무조사와 문답사례	48
1. 세무조사 개요	49
2. 신고납부 유의사항	50
3. 세무조사 추정사례	53
4. 질의응답 사례	57
VI. 유익한 세금상식	61
1. 구제제도	62
2. 지방세 절세요령	64
3.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65
4. 납세증명서 등 발급안내	66
5. 부동산의 과세표준	67
6. 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	68
▣ 부 록	69
1. 지방세·국세 문의전화	70
2. 기업지원 시책안내	71
3. 기업지원 관련 문의전화	75
4. 납세자 권리현장	76
5. 징수·부과행정서비스 현장	77
6. 지방세 관련서식	80

I. 지방세

1. 지방세 개요
2. 용어 설명
3. 지방세 체계
4. 세목별 납부시기

▣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재산·수익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도로건설·하수도·쓰레기처리·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

※ 국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 귀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구분

- 광역시세 : 광역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 (市 금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 구세 : 기초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 (區 금고)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등)

▣ 과세권의 근거

- 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와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법원(法源)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가 있음
- 관련 법률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용어 설명

-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과세표준액이라 함

-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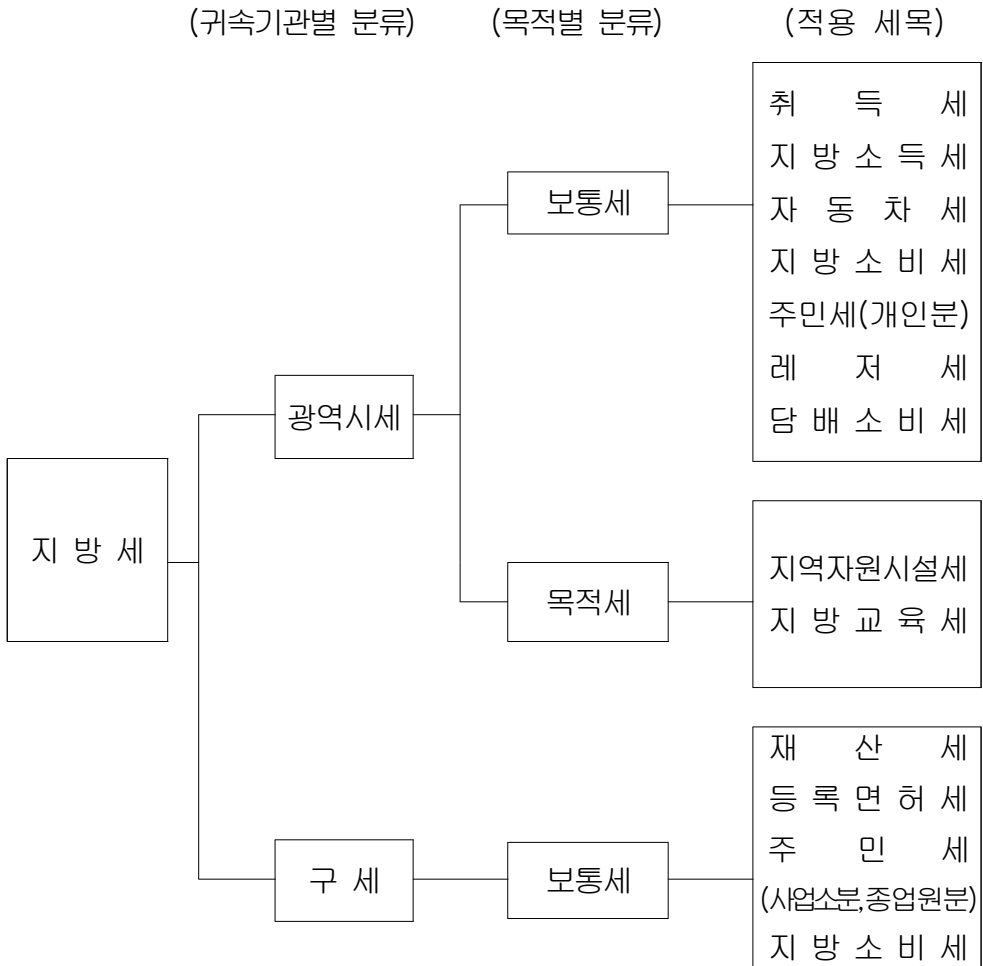
- **가 산 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규정한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2024년부터는 체납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과 함께 이자율이 변경되었음(산정방식은 기존과 동일)

※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 통합 및 용어 정비(2024년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부과고지 전 (1일 0.022%)
	가산금(1회 3%)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1회 3%)
	중가산금(매월 0.75%)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매월 0.66%)
			가산세

▣ 지방세 체계



▣ 조세란?

조세는 국세(내국세와 관세)와 지방세로 분류, 세입 귀속기관은

- 내국세 : 국세청 및 세무서
- 관 세 : 관세청 및 세관
- 지방세 : 광역지방자치단체(市), 기초지방자치단체(區·郡)

▣ 세목별 납부시기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 납부기한
취 득 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중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 민 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8.16~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8.1~8.3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16 ~ 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특별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내 • 양도소득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 종합소득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 특별징수분: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소유)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분: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 수시분: 폐차,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자동차세(주행)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세 납부기한과 동일(다음달 말일)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부가가치세의 25.3%) •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달 말 20일까지 •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발생시 수시부과
레 저 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 설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 매년 7월(16~31), 9월(16~30) : 기존 공동시설세분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재 산 세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주택, 항공기 : 매년 7.16 ~ 31(과세기준일 6.1) •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 : 7월, 9월 1/2씩 부과 • 토지(주택토지 제외) : 매년 9.16 ~ 30(과세기준일 6.1)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자동차 제외), 등록면허세(등록),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재산세 · 자동차세(소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 위 신고납부 미 이행시 수시부과

Ⅲ. 주요 세목별 해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주민세
4. 지방소득세
5. 재산세
6. 자동차세
7. 지방소비세

① 취득세

-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대수선포함)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등의 간주취득도 해당

가. 취득의 시기

- 유상 승계취득(매매, 교환)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단,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
- 무상 승계취득(상속, 증여, 기부 등) : 계약일(다만, 상속은 상속개시일)
- 건축에 의한 취득 : 사용승인서교부일(다만, 임시사용승인 있을 경우 그날)
- 지목변경 취득 : 사실상 지목 변경된 날(다만,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변경일)

나. 과세대상(물건)

-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목변경, 차량·선박·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간주취득)

다. 과점주주 납세의무

- 취득시기 : 최초 과점주주 되는 때 또는 과점주주 주식 비율 증가한 때
- 요 건 :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초과
- 세 율 : 2%
- 과세표준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 지분율(또는 증가비율)

라. 신고 및 납부 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단,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 / 증여는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
- 비과세·감면받은 후 과세대상(추징대상)이 될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내

마.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4%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 4.6%)
- 주택 유상취득 다주택자 증과세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및 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취득가액의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 유형별 취득세 세율

구 분		세 율	
부동산	상속	2.3%(농지 2.3%)	
	무상취득(증여 등)	일반	3.5%(비영리 2.8%)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12.0%
	원시취득(신·증축)		2.8%
	공유물 분할		2.3%
	그 밖의 원인(매매 등)		4.0%(농지 3%)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 10페이지 참조)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text{취득가액} \times 2/3 \text{억 원} - 3)/100$
		9억원 초과	3.0%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		12.0%
법인의 합병·분할		4.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경자동차 4.0%)
	이륜자동차		2.0%
	그 밖에 자동차	비영업용	5.0%(경자동차 4.0%)
		영업용	4.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 장비	등록대상	3.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골프·승마·요트·종합체육시설·콘도미니엄 회원권		2.0%	

바. 과세표준

-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다만, 상속은 시가표준액
 - ※ 1억원 이하이거나 차량 및 기계장비일 경우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및 원시취득(신·증축) : 사실상 취득가격
 - ※ 차량 및 기계장비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

【참고 1】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①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참고 2】 건설자금이자의 산입 범위(행자부 세정 13407-246, '01.3.5 시행지침)

- (1) 「건설자금이자」의 근거 규정의 변경적용
 - 종전규정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총당한 금액의 이자」에서 2001년부터 「건설자금에 총당한 금액의 이자」로 법인세법준용규정이 삭제 변경되어 건설자금의 이자의 범위가 확대됨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처리되어 법인장부에 계상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함
- (2) 건설자금이자의 산입범위
 - 재고자산(예 :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시 특정차입금(취득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그대로 취득원가에 산입
 - 고정자산의 건설중에 소요된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도 과표에 포함
 - 토지 취득 이후 건물준공시까지 발생하는 토지분의 건설자금이자분을 건물원가에 산입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는 건설자금이자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토지(예 : 아파트용지 등)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만 적수 계산하여 처리
- (3) 적용시기(2001. 1. 1 시행)
 - 2001. 1. 1 이후 법인장부에 계상된 재고자산 등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사. 부속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21조)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내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의2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속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

아. 취득세 기한후 신고제도 운영(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57조)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만 1월이내 수정신고시 50% 경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30% 경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20%를 각각 경감하는 것이나,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취득세 계산사례

<공장을 신축한 때>

<사 례>

- 사용승인일(준공일) : 2024. 2. 20.
- 소재지 : 울산 북구 상안동 000번지
- 취득가격(건물신축 비용) : 10억원

<계산내용>

- 신고납부기한 : 2024. 4. 22.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내)
- 과세표준액 : 10억원
 -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 총액(장부기장 계정과목 불문)
 - 부수시설물 취득비용, 건설자금이자, 관련경비 등 과표누락 유의
- 납부할 취득세 : 31,600,000원
 - 취득세 = 28,000,000원 (10억원 × 취득세율 2.8%)
 - 농특세 = 2,000,000원 (10억원 × 舊 취득세율 2% × 농특세율 10%)
 - 교육세 = 1,600,000원 (10억원 × 舊 등록세율 0.8% × 교육세율 20%)
- ※ 소재지가 산업단지 내 감면대상인 경우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참조

<과점주주가 된 때>

<사 례>

- 과점주주가 된 때(주식명의개서일) : 2024. 2. 20.
-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전체지분이 40% → 60% 증가
 - 특수관계인 전체지분이 50%초과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 취득일 기준 법인 장부가액 : 10억원
 - 취득세 물건별 장부상 미상각잔액 합계액이 과세표준액임

<계산내용>

- 신고납부기한 : 2024. 4. 22.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내)
- 납세자의무자 : 과점주주 (법인이 아닌 과점주주 개인)
- 납 세 지 : 물건 소재지 시·군·구
- 과세표준액 : 6억원 (장부가액 10억 × 과점주주 비율 60%)
- 납부할 취득세 : 13,200,000원
 - 취득세 = 12,000,000원 (취득가격 600,000,000원 × 취득세율 2%)
 - 농특세 = 1,200,000원 (취득세 12,000,000원 × 농특세율 10%)
- ※ 물건소재지 납세기관별 각각 취득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토지를 취득한 때〉

- 소개수수료나 연체이자 등을 신고 과표에서 누락시키는 사례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지급하였거나 등기(등록) 한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이나 등기(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지목이 전·담·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물신축에 따른 투입비용을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기장한 후 공사 완공시점에 토지, 건물, 구축물 계정으로 대체하므로 지목변경공사비(구내포장, 석축, 옹벽공사비 등)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에 해당되어 신축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건물을 취득한 때〉

-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사한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욕탕용 보일러,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배전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도 과세대상.
- 승강기, 전기설비 등을 건물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별도계정에 계상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 건축부서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대수선의 요건에 해당되면 과세대상

〈차량을 취득한 때〉

- 탁송료, 할부이자 등 취득 부대비용을 과표에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법인임에도 법인장부상 취득가액(기장금액)이 아닌,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비치된 시가표준액으로 과소신고 사례
- 차량의 엔진, 정원, 적재정량 또는 차체를 변경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액으로 구조변경 취득세를 신고납부 않거나 누락하는 사례
- 공장 등 구내에만 사용하는 무등록 전동지게차도 취득세 과세대상

◎ 질의답변 사례 (유권해석)

【사례 1】 할부 취득 차량 등의 취득시기(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

차량·기계장비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는 할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사례 2】 세륵시설의 과세대상 여부(행자부 지방세운영과-3116, 2015.10.5)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문형 또는 터널형이 아닌 소규모 세륵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3】 취득의 시기(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사례 4】 크레인의 과세여부(조세심판원, 2012.6.26)

고정식 크레인으로서 공장부지의 야적장이나 강재장에 보관관리하기 위한 강재를 견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임.

【사례 5】 미준공건물 인수 후 완공한 경우(행자부 세정 13407-1196, 2000.10.13)

건축중인 건축물을 인수하여 동 건축물을 완공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수한 미지급금과 인수후 투입된 비용이 동 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이 취득가격이 됨

【사례 6】 하수원인자부담금은 과세표준 포함(행자부 세정 13430-1142, 2004.8.30)

건물신축시 발생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표 포함

【사례 7】 사해행위의 취소판결시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2008.8.20)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당시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님

【사례 8】 분양계약 체결 후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조세심판원, 2008.11.28)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법인과 거래한 경우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되지 않음

【사례 9】 생산설비용 건설기계 과세대상 여부(행자부 세정 13430-50, 2000.1.14)

공기압축기와 천정크레인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제조)공장의 생산과정에 설치되어 순수한 생산기계 설비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10】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 임대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행자부, 2006.12.18)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부동산이 아닌 산업용부동산(화물터미널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부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한 부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사례 11】 건축물 리모델링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행자부 세정-4951,2007.11.22)

기존업무용 건축물을 승계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행위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수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례 12】 채권자가 대위등기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여부(행자부 행심,2007.4.30)

채권자인 모 은행에서 채무자 상속인을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함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비록 경매절차를 밟기 위한 취득이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임

【사례 13】 상속취득 후 이전등기를 못한 경우(행안부 지방세운영과, 2008.8.26)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않음

【사례 14】 처 명의로 계약 후 남편 명의로 이전한 경우(내무부 세정, 1984.9.28.)

처가 남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초 매매계약자인 처가 잔금까지 지급한 후 동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등기하였다면 두 사람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사례 15】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행자부, 2006.4.18)

개인사업자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시 취득세 감면사유에 해당됨

【사례 16】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행안부 지방세운영과-869, 2019.4.2)

연부계약에 따른 최종 잔금이 지급되기 전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처음부터 연부취득 중인 물건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부취득 중 성립했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기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2-1 등록면허세 (등록분)**가. 납세의무자**

재산권 및 법인등기,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나. 납세의무성립일 : 등기·등록을 하는 때

다. 과세표준 : 부동산, 선박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는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라. 신고 및 납부 :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마. 등록면허세 납세지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법 인 등 기 : 본점, 지점 또는 주사무소 등의 소재지
- 자동차·건설기계 : 등록지(사용본거지) 소재지
- 선박·항공기 : 선적항 또는 정치장 소재지

바. 등록면허세 세율

구 분		현행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의 이전(상속,무상,유상)	0.8%~2%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 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 타	15,000원

구 분		현행세율
건설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0.2%
	기 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 타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 타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78,7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12,000원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변경(감구)	15,000원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기타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 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상속 외	40,200원
	프로그램등록법(상속 외)	20,000원
	기 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기 타	12,000원	

2-2 등록면허세 (면허분)

“면허”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해제를 하는 행정 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심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임

가.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매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
- 수시분 : 행정관청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신규면허)와 그 면허를 변경하는 자(사업장의 규모, 사업장의 소재지 등)는 그 면허의 종류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행정행위를 득할 때 납부

나.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과세기준일 1월 1일)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함

다. 서울(인구50만 이상의 시)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율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과세대상	통신판매업, 단란주점, 유흥주점업,주유소 등	수렵, 각종 검정기관 및 대행자의 지정 등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총포소지 등	1~3종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면허	각종 배출시설의 설치 등

라. 기타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 기관에 그 면허를 취소 요구하여 면허를 취소토록 할 수 있음
-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함께 면허 등을 받은 행정기관(구청 등)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단, 생활 밀접형 인·허가(49개 업종)는 행정기관(구청 등)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 신고하면 됨
-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2001년부터 폐지됨

③ 주민세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주소지분)에 부과되는 “개인분”과,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소분 통합(2021년개정)

기 준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	개인분 (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율] 5~20만원 + [연면적세율] 250원/m ² (연면적 330m ² 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부과고지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m ² (연면적 330m ² 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	신고납부						

1. 개인분 주민세

가.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 과세제외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경과 외국인,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 구성하고 있는 30세미만 미혼자, 미성년자

나. 부과 및 징수

- 과세기준일: 7월 1일
- 징수방법과 납기 :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보통징수

다. 세율

- 주민세(개인분) : 10,000원
- ※ 지방교육세 : 주민세(개인분)의 10% (인구50만 미만기준)

2. 사업소분 주민세

가.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포함)
- 사업소의 연면적(과세대상)이 330㎡를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나. 과세표준액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5만원 ~ 20만원(자본금액 기준)
 -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 이하 : 5만원
 - 2)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만원
 -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50억 초과 :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 5만원

다. 세율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과세제외 면적

구 분	과 세 대 상	비과세 대상	비 고
건 물	·공장, 사무실, 화장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건물, 창고 등 ·무허가 건물도 포함됨	·기숙사, 식당, 체육관, 탈의실, 휴게실, 목욕탕, 의료실 등 (후생복지전용시설 한함) ·대피시설, 가동중인 오물 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직장어린이집	회의실은 과세대상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옥외 크레인, 호이스트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건물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옥내 저유조, 저장조	수평투영 면적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중과세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라. 부과 및 징수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징수방법과 납기 :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기본 세율 금액과 연면적 세율금액을 합산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함.

◎ 신고납부 계산사례

《사 례》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사업장내 건물 : 연면적 380㎡ (사무실 50㎡, 휴게실 30㎡, 공장 300㎡)
- 저장시설(저유조 등) : 100㎡, 옥외 크레인 수평투영 면적 : 100㎡

《계산내용》

- 과세대상판단 : 매년 7. 1 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시
- 신고납부기간 : 2024. 8. 1 ~ 9. 2 (8월 말일이 공휴일로 그 다음날)
- 과세표준 : 기본세액 + 과세대상면적(550㎡)
 - 기본세율 : 5 ~ 20만원
 - 사업장 전체 연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기계장치 + 옥외저장시설
 - 과세제외 면적 : 30㎡ (종업원 보건·후생시설 및 오물처리시설 등)
- 납부할 사업소분 주민세 : 187,500원
 - 사업소분 주민세 = 기본세액 + 과세대상면적 550㎡ × 250원(1㎡당)
- ※ 사업장별 소재지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함

◎ 가산세 사례

- ◇ 사례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무신고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부과
- ◇ 사례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분 세액의 10%) 부과
- ◇ 사례3)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 × 2.2/10,000 × 납부지연일수) 부과

3. 종업원분 주민세 (종전 : 종업원할 사업소세)

가.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

나. 세 율 :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0.5%)

- 정당세액 = 당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과세표준액) × 0.5%(세율)

다. 징수방법 등

- 납 기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면 세 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라.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지방세법 제84조의2)
- 과세표준액의 범위(당해 월의 종업원 급여총액 - 비과세 소득)

종업원 급여범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각종 수당 종류	관리직	생산직	비 고
• 정기 급여 + • 비정기 급여 -상여금, 성과금 -격려금, 학자금 -기타 수당 등	연장, 야간, 휴일 수당	과세	과세 / 비과세(일부)	월정급여 210만원이하자 연간 240만원까지
	식사대, 피복수당	과세 / 비과세(일부)	과세 / 비과세(일부)	식대 월 20만원까지
	일숙직비등(실비변상)	비과세	비과세	
	연, 월차, 유휴수당 등	과세	과세	

※ 연장야간휴일수당 : 월정급여 210만원이하 생산직근로자에 지급한 연 240만원 까지 비과세되며,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도 2003년 7월부터 해당됩니다.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 해당월수

※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달,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총액 및 월 수 산정에서 제외

- 종업원의 개념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급여미지급 비상근임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요령(행자부, '06.8.30)

⇒ 사업소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임원은 종업원에서 제외

◎ 종업원분 주민세 사례

《사 례》

- A사업장에서 최근 12개월(2023. 3월 ~ 2024. 2월)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이 3억7000만원, 이번 달 총급여액이 435백만원, 비과세급여액이 7백만원임.
- 급여지급일 : 2024. 2. 25.

《계산내용》

- 과세대상판단 : 최근 12개월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000만원 초과 → 과세대상
- 신고납부기한 : 2024. 3. 10.까지 (급여지급 익월 10일한)
- 납 세 의 무 자 : 사업주 (과세표준액만 종업원 급여로 함)
- 과 세 표 준 액 : 428,000,000원 (총급여 435백만원 - 비과세급여 7백만원)
- 납부할 세액 : 2,140,000원
 - 종업원분 주민세 산출 = 과세급여 428,000,000원 × 세율 0.5%

◎ 질의답변 사례(유권해석)

【사례 1】 동일건물 내에 조직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각각 등록한 경우,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소 (행자부 행심 2006-390, 2006.8.28)

- 동일건물 내에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연관성, 사무의 운영현황(운영의 독립성), 회계처리방식, 인사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하여 종전의 전화국을 ○○지사, ○○영업국 등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독립된 인사발령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당해 종업원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1구내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례 2】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내무부 세정13407-770, 1997.7.9)

- 종업원의 보건·위생·교양 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연수관과 구내식당 그리고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님
연수관이란 종업원 모두가 자유의사에 따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의 훈련시설로서의 연수원은 과세대상임

【사례 3】 동일건물 내 사업소(영업점과 지역본부)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안행부 세제과-3937, 2014.3.20)

- 영업점과 지역본부의 종업원이 동일한 갑과 고용관계이고, 지역본부가 영업점의 운영을 위해 존재하며, 영업적 직원들의 관리 역시 맡고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소로 보기 어려움.

【사례 4】 해당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상시종업원인지 또는 수시종업원인지 여부(행자부 지방세운영과-1613, 2015.6.2.)

- 시간제 고용 종업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사업소에 고용되어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관련 법에 따른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점,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상 간이세액 인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고용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비록 해당 월의 일부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상시 고용 종업원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종업원을 각각 1명으로 보아 월 통상인원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되며, 2014년도부터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

가.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나. 과세대상

-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이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다. 과세표준

-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독립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됨.

라. 세율

<개인지방소득>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종합소득 (2023년 부터 적용)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 형태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양 ※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 적용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100분의 10

<법인지방소득>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2023년 부터 적용)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1)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3천억원 초과	62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내국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 휴양, 피서, 위락용)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20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 (20/1,000)'의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 적용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100분의 10

마. 확정신고와 납부

구 분	신고와 납부
개인지방소득 (종합, 퇴직, 양도소득)	해당 소득세의 신고기한(다음년도 5. 31.)까지 확정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바. 기타

- 지방소득세도 신고주의 세목이므로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등이 적용됨.

◎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안분율(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left[\left(\frac{\text{관할 시·군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right) + \left(\frac{\text{관할 시·군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임
- 종업원의 수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수
-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함
- 건축물 연면적에 종업원 없이 사무실·창고·연수시설 등만 있는 경우도 포함

◎ 질의답변 사례 (유권해석)

【사례 1】 법인세 등의 가산세가 과표 포함(행자부세정 13407-1202,,1999.10.01)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도 주민세 과세표준

【사례 2】 지입차주에 대한 사업장할 주민세 납세여부(행자부, 2007.8.24)

-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지입차주가 화물운송사업자인 법인사업장을 지입차주의 사업장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법인의 사업장은 지입회사에 귀속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는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장할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전에는 지입차주의 경우 소속 운수회사의 사업장을 물적설비로 보고, 그 소속 운수회사의 소재지에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음

【사례 3】 물적 분할시 법인세 안분(행자부 세정 13434-383, 2002.4.23)

- 사업연도중 법인의 물적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지방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건축물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임.

5 재산세

- 토지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제의 구세(시·군세)로서
- 재산세를 기본으로 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규정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가. 납세의무자 : 6월 1일 기준 재산의 소유자

나. 과세대상 및 징수방법 등

납부 시기별	과 세 대 상	부과 방법
7.16 ~ 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1기분) • 항공기 선박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부속토지를 합산해 과세 • 산출세액의 1/2 : 7월(1기분) 잔여세액은 9월(2기분) 고지
9.16 ~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2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종합토지세 과세토지 재산세로 부과(납기변경)

다.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토지의 과세표준>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
-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

※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전국단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합산하며 분리과세대상토지는 해당 토지별로 건건이 과세함.

라. 서울(지방세법 제111조).**(1) 토지****①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③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시(읍·면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 고 급 선 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마. 징수방법 및 납세지**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 재산세 납세지(지방세법 제108조).

과세대상	납세지
토지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	주택의 소재지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바. 납기

과세대상	납기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⑥ 자동차세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나. 세액산출

- 승합차 및 화물차 : 승합차 종류 및 화물차 적재정량(kg)에 따라 일정액 부과
- 일반승용차 연간세액 산출방법
⇒ 배기량 × cc당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율 = 연세액(1/2씩 1, 2기분 분할고지)
- 일반승용차(비영업용) 세율

배 기 량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비 고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일반승용차 (비영업용)

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율

-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 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차령적용은 1.1-6.30 등록은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적용하고
7.1-12.31 등록은 7.1부터 다음해 6.30까지를 1년으로 적용함

라. 과세기준일 및 납부방법

- 1기분 : 6. 16 ~ 6. 30(과세기준일 6. 1)
 - 2기분 : 12. 16 ~ 12. 31(과세기준일 12. 1)
 - 납부방법
 - 정기분 : 매년 6월, 12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세액의 6.4%를 공제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1월 31일까지 납부
- ※ 연간 자동차세 10만원 이하 차량은 1기분(6월)에 전액 부과됨

마. 차령기산일(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 신규 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예시 : 2009. 4. 10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 >
 - 2009. 5. 10 등록 ⇒ 차령기산일 : 2009. 5. 10
 - 2010. 2. 10 등록 ⇒ 차령기산일 : 2009. 12. 31
- 기산일이 1. 1 ~ 6. 30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과세연도 2021년, 등록 2013년)

-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1 : 제1기분, 제2기분 차령이 동일함
- (2021-2013)+1=9년
- 기산일이 7. 1 ~ 12. 31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과세연도 2021년, 등록 2013년)
 -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 : 2021 - 2013 = 8년
 -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 + 1 : (2021 -2013) +1 = 9년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체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360 임.

7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25.3%)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설정한 것으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일괄징수한 뒤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 및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에 안분하는 것

※ 민간최종소비지출 : 민간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간 총 소비지출수준을 시·도별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매년 통계청이 발표

가.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나. 과세표준 및 세액

-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신고 및 납부

-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 ②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IV. 2024년 개정 지방세법

▣ 2024년 개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 납부지연가산세 명칭 변경 및 이자율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부과고지 전 (1일 0.022%)	가산세
가산금	가산금(1회 3%)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1회 3%)	
	증가산금(매월 0.75%)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매월 0.66%)	

※ '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舊 증가산금) 부과 기준 체납세액 30만원→45만원 변경

- 세액이 45만원 미만일 경우 체납 시 매월 붙는 납부지연가산세(0.66%)가 붙지 않음

<지방세법>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 가능(중소기업은 2개월)
- 100만원~200만원 : 100만원 초과 금액 / 200만원 초과 : 50%
- ※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4년 신고분)부터 적용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시 가산세 20%→10% 경감

-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경감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2021년~2024년)

- 국세인 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2021년~2024년)

V.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2.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면
3. 산업단지 기업에 대한 감면
4. 감면관련 유권해석 사례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감면 요건(창업중소기업)
 -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구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다시 동일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
 - ②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 요건(창업벤처중소기업)
 -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②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 내용

근거규정	대상세목	경감율	구비서류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	취득세	75%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특법 별지 제1호의4)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정관, 이사회 회의록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매출장, 매입장 등)
	재산세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그다음2년 :50%	

- 창업일의 판단
 - 법인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제58조의3 제4항)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양 교습학원,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제58조의3 제6항)**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신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합병 등에 의한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 중 인수·매입한 자산의 가액이 30%이하는 제외)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기존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서로 동종업종인 경우에 한함)
-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추징대상(제58조의3 제7항)**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임대포함)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임대포함)하는 경우

②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면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및 동법 제120조
- **납세의무자 및 감면주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동시에 감면받는 주체임
- **감면대상**
 - 취득세 75% 경감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감면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 전환하여 신설된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 **사업용 고정자산**
동 규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 “이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같은법 제32조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19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무관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뜻한다고 본다. 또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즉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유예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및 서화, 골동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타 이와 유사한 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동산을 말한다.
- **추징**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거주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기업에 대한 감면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감면대상(산업단지 시행자) 35% 감면
 - 산업단지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단지 시행자가 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단지 시행자가 조성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대상(산업단지 입주자) 신·증축 75%, 대수선 40% 감면
 - 산업단지 시행자 외의 자(입주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하는 토지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 감면대상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감면내용

감면대상	근거규정	대상세목	감면율
시행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의 제1항~3항	취득세	35%
		재산세	60%(조성공사 중 및 준공이후 5년)
시행자외 (입주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의 제4항	취득세	- 신·증축 : 75%(법50%+조례25%) - 대수선 : 40%(법25%+조례15%)
		재산세	75%(5년)

- 감면배제(추징)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취득한 경우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4 감면관련 유권해석 사례

【사례 1】 산업단지 개발시행자 감면의 범위(행안부-2614,2011.6.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이외에도 판매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등 포괄적으로 해당됨

【사례 2】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례(조세심판원-0263,2010.9.9)

의대부속병원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식당, 편의점, 커피점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정하는 것은 타당함

【사례 3】 창업중소기업의 정당한 사유(행자부 행심 제2005-495호, 2005.11.28)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창업중소기업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장정비 및 새로운 설비라인 구축 등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건설 중 합병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사례 4】 산업단지 내 부대시설용건축물만 건축하여 사용(행안부 지방세 운영과-1476호, 2012.5.11)

공장이라 함은 반드시 제조시설이 필요하므로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부대시설만 설치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대상 산업용건축물의 공장으로 보기 어려움

【사례 5】 산업단지 감면 사용일 판단[감사원 감심 제2006-88호,2006.8.24]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정하는 때 사용개시일은 건축물 착공일이 아니고 당해 건축물 사용일이다

【사례 6】 산업단지 시행사업자 지정 이전에 취득(행자부,세정-123,2005.12.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받은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상기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례 7】 창업중소기업 업종추가경우(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163,2009.5.29)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사례 8】 창업중소기업의 정당한 사유(행자부 행심 제2007-353.354호 2007.6.25)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처분청의 공사중지 요청으로 감면기간이 경과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경영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9】 산업단지 내 임대용 부동산의 감면(행자부 세정-1894,2006.5.10)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받은 자가 공장용으로 사용한다면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장용 건축물을 제3자가 임대받은 후 공장이 아닌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기 면제한 취득세는 추정대상임.

【사례 10】 산업단지 내 감면과 추정사유(안행부 지방세운영과-714, 2014.2.27.)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단지조성 완료 후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승계취득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취지에 어긋나므로 모두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 11】 부도난 공장에 동종의 사업개시(행자부, 세정 13407-409, 2002.5.2)

부도난 회사의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12】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조세심판원 조심 2018지 2007, 2019.6.28.)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례 13】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재산세감면 여부 (대법원2019두48721,2019.11.14.)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 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 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사례 14】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 받은 경우(감사원, 감심2018-30,2020.03.03.)

청구인이 종전 개인기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설립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취득세감면대상(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인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15】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의 정당한 사유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864호,2021.04.12.)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양(매각)하는 경우라도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매각)이라는 조건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발계획 승인 당시 부터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령상의 외부적 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사례 16】 매매용 및 수출용중고자동차 감면기준(행안부, 지방세특례 제도과-2596,2018.07.26.)

법정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를 모두 목적내 사용으로 보아 추정 배제하고, 별도의 자격요건 없는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경우에 限하여 목적내 사용으로 보아 추정 배제함.

【사례 17】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담보신탁의 경우(행안부, 지방세특례 제도과-2844, 2020.11.30.)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자라 할 것이므로 수탁자의 경우 비록,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6.1.)현재 사업시행자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례 18】 산업단지 입주공장 합병의 경우-(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89,2018.1.22.)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 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할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례 19】 외투기업이 경제자유구역 투자한 경우(행자부, 지방세특례 제도-2078,2017.7.21.)

기존 외국인 투자가 있었던 기업이 기재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에 경제자유구역에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제조업의 미화 3천만불이상의 투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되는 새로운 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자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그 비율에 따라 결정 받은 신고서상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된 때의 비율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 20】 법인 물적분할 후 역 합병에 대한 취득세 추정여부(지방세 특례제도과-825, 2017.04.27.)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유예기간 내 모회사를 역 합병하여 보유주식을 100분의 50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유예기간 내 보유주식을 100분의 50미만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물적분할 이후에 해당 주주 등이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 합병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추정 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사례 21】 벤처기업집적시설 임대하는 경우(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625호 2021.03.12.)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라도 이를 사용하는 임차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VI. 세무조사와 문답사례

1. 세무조사 개요
2. 신고납부 유의사항
3. 세무조사 추정사례
4. 질의응답 사례

① 세무조사 개요

1. 세무조사의 개념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2. 세무조사의 목적

-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법인장부가액에 의거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세액이 납부되었는지 확인·대조하는 것으로서,
- 이러한 절차는 과소·또는 누락된 세액의 추정조치로 납세의무 조기 확정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나아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함

3.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지방세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5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준용)

4. 조사 대상

- 법인 : 관내 모든 법인 및 관내 사업개시 또는 부동산 취득법인
- 개인 : 일정 기준이상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고가 부동산 취득한 경우

5. 조사 방법

- 직접조사 : 사업장 출장하여 법인장부와 거래사실 등을 조사
- 서면조사 : 서면조사서 및 법인장부 사본 등을 제출받아 검토분석
- 특별조사 : 세금 탈루·은닉한 혐의를 포착해 별도계획에 의한 조사

6. 조사통지 및 조사기간

- 조사할 사항 등을 사전통지(개시 15일전)
- 화재, 재해, 사업상 심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등 세무 조사연기 가능
- 조사기간은 20일 이내,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연장

7. 방문조사 시 준비사항

- 조사장소: 3 ~ 5명 정도 업무 가능한 회의실(장소 사전확보)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조직도 사본
 - 조사대상 연도별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급여대장(일용대장 포함)
 - 보조장부(고정자산 계정별 원장),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② 신고납부 유의사항

[사례 1]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시 일용임금도 과표에 포함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부 시 일용직의 임금도 포함되는지?

- ☞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를 말하고, 지방세법 운용세칙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근종사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 이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급여를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어 각종 급여, 상여금, 성과금, 각종 수당, 학자금 등 소득세 연말정산시에 소득으로 계상되는 급여는 모두 과세표준에 해당되고 이때 일용직 임금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정급여 190만원이하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수당 등은 과세표준에 제외됩니다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액인 ‘종업원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법인세법(국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 된 소득(인정상여)도 포함됨.
- 비과세 대상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급여로서 ‘월통상 임금이 190만원이하의 생산직 종업원’이 받는 급여중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해당됨.

[사례 2] 차량의 종류변경 취득세 과세대상

트레일러를 취득한 후 관할관청의 구조변경허가를 받아 위험물이동탱크저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면 취득세 대상인지?

- ☞ 냉동탑, 일반강철·탱크로리·유압크레인 설치, 고철을 적재하기 위한 크레인 설치 등은 차량 종류변경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과세대상임

[사례 3] 구내에서 사용하는 번호판 없는 전동지게차 취득세 과세대상

공장 등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번호판 없는 전동지게차 또는 운전학원 내에만 운행하는 교습용 차량의 경우 등록도 하지 않는데도 취득세 대상인지?

- ☞ 차량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의 범위”에는 태양열, 밧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동지게차나 운전교습용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도 과세대상임

[사례 4] 컨테이너박스 등 임시용 가설건축물도 취득세 과세대상

조립식판넬·컨테이너박스비닐포장 등으로 된 임시용 가설건축물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 중에는 어떤 것이 대상인지?

☞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상 유무나 가설건물 인지에 상관없이 기둥과 지붕 또는 벽이 있는 등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면 과세대상이며, 용도나 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다만 임시용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됨

※ 과세대상 시설 등의 범위(축조 또는 개보수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건축물의 시설 : ① 레저시설
- ②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③ 도크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 ④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⑤ 급배수시설(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 ⑥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시설물 : ① 승강기
- ②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③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 ④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 ⑤ 부착된 금고 ⑥ 교환시설
- ⑦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⑧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사례 5]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주식소유지분이 변동되어 과점주주(특수관계인 50% 초과 보유)가 되었을 때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지, 과세표준액의 산출은?

☞ 비상장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보유지분이 합쳐서 50% 초과되었을 때에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이때 취득시기는 명의개서일이 되며 60일(2010년도까지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액은 취득시기를 기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별 장부가액(감가상각비 제외)에 과점주주 비율 또는 지분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취득세율은 2%입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사례 6] 감면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후에 사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감면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 ☞ 지방세 감면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되었으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 등에 의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에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대부분 단서조항으로 “일정기간 보유 또는 직접 감면목적에 사용”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됩니다.

③ 세무조사 추정사례

< 취 득 세 >

[사례: 부동산 매입대금 지연연체료 등 과표 누락]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을 취득과표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치> (주)○○는 토지,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신고과표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추정.

[사례: 에너지 공급업체 저장시설에 대한 취득세 추정]

<내용> 저장시설을 기계장치계정에 기장 이후 취득세 미신고

<조치> 저유조, LNG특수저장조, 화학제품을 위한 저장시설 등은 계정 과목과 상관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정

[사례: 산업단지 내 변압기 설치시 취득세 납부대상]

<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 구축물(독립·부수시설물)을 설치 또는 교체한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이나 누락

<조치> 산업단지 내 취득이라도 독립·부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님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

[사례: 공장구내 지게차 및 청소차량 신고누락]

<내용>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과 관련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에 의해 공장구내를 이동·청소하는 전동청소차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조치> 전동지게차는 화물하역용으로 지게차에 해당되며, 청소차량 또한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정

[사례: 결산서상 비품계정에 기장한 세원 추정]

<내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 토지, 구축물을 해당 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비품 등 기타 계정에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치> (주)○○건설은 건축물 신축비용은 자본적 지출 일부를 고정자산 계정에 기장하지 않고 법인의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비용처리계정에 기장하여 보조원장을 조사하여 누락한 취득세 추정

[사례: 도급시공 건축물 공사비 과소신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200㎡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 시공하여야하고 건축주는 실제로 지급한 공사금액(법인장부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조치> ○○(주)의 도급건설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축주의 요구에 의거 이중 도급계약서와 본 계약 후 재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거나, 층별 시공업체를 달리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여 차액을 추정

[사례: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취득과표 누락]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건설자금이자는 1호에 따라 이에 해당함

<조치> ○○건설(주)은 발생한 아파트용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 납부하여 건설자금이자 과표 누락에 대한 취득세를 추정

[사례: 타 계정에 기장한 건물 신축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내용> 사옥을 신축하면서 기초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전기공사비, 승강기공사비, 실내조명공사비, 조형물 등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각각 구분 발주하여 공사를 마친 후 토목, 건축,

설계 감리비는 건물계정에, 기타 비용은 건물 부속계정 등 타 계정에 가장하고 건물계정 비용만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조치> 전기공사비 등 타 계정에 가장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 추정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

[사례: 재산세의 구조, 용도지수 및 높이 등 적용 착오]

<내용> 건물의 구조, 용도, 높이(8m이상), 저유조 용량 등 착오과세

<조치> 건물의 구조, 용도, 높이 등은 재산세 계산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미적용 또는 착오 적용 시 재산세액이 과소산출됨에 따라 건물대장과 현장 확인을 통해 추정

[사례: 연간 240만원 초과 지급된 수당 과표누락]

<내용>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관련 종사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에 대하여 연 240만원 한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해야 함에도,

<조치> 연간 비과세수당을 240만원 초과하여 계산한 급여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과표에 포함시켜 과소 신고분 추정

[사례: 상여처분 소득과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금 과표누락]

<내용>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과정에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중 상여처분된 소득과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금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임에도 누락하여,

<조치> 세무조정시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미신고분 과표로 보아 추정

[사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분 및 납세지 착오납부]

<내용>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사업장이 다수일 때에는 시·군별로 종업원수 및 건물연면적을 합산하여 안분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타 시에 본점을 두고 관내에 사업장(지점)을 설치 운영하면서 본점 관할 시에 일괄 납입하여,

<조치>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별 안분계산 과세

[사례: 저장시설 신고누락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추정]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만 있는 경우에도 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치> 저장조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하지 않아 추정

[사례: 컨테이너와 천막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내용> 건물연면적과 건축물 등은 신고하고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사업장내에 설치된 창고용 컨테이너건물 50㎡과 천막을 설치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 150㎡을 미신고한 경우

<조치> 컨테이너와 천막도 임시건축물로 주민세(사업소분) 대상으로 추정

[사례: 법인세 추가 납부 후 미신고]

<내용>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거나 법인세 결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 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신고한 사례가 있어,

<조치>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법인세 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적기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정

[사례: 건축물·시설장치 미포함 시군의 지방소득세 추정]

<내용> 사업장이 2개이상 시군에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납부시 건축물 등도 안분계산 하여야 함에도,

<조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해당 시군의 건축물, 종업원수 등을 비롯 시설물 등의 면적도 포함하여 안분 계산해 착오분 추정

4] 질의응답 사례

[사례: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액 예시]

《예시1》 - 법인장부상 가액 : 10억, 시가표준액 : 6억

○ 신고가액 : 10억 ⇒ 과세표준액 10억

○ 신고가액 : 5억 ⇒ 과세표준액 10억

《예시2》 - 법인장부상 가액 : 10억, 시가표준액 : 15억

○ 신고가액 : 10억 ⇒ 과세표준액 10억

☞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확인된 경우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례: 가산세 적용 예시]

<질문> ○ 정당세액 : 1억원

○ 신고납부한 세액 : 8천만원

○ 납부지연일수 : 250일일 경우의 추정세액은?

☞ - 부족세액(A) : 2천만원

- 과소신고가산세(B) : 2천만원 × 10/100 = 2,0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C) : 2천만원 × 2.2/10,000 × 250일 = 1,100,000원

- 추정세액 : A+B+C= 23,100,000원

[사례: 부부 공동명의 때 재산세]

<질문> 올해 5월 30일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하였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만약 매수자인 우리가 납부해야 한다면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고지서가 발부 되나요?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는 보유 개념으로 파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므로 귀하가 (부부공동)올해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 재산은 공동명의 지분별로 각각 안분 과세되어 소유자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부됩니다

[사례: 잔금지급 후 등기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질문> 본인이 집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자가 등기를 하지 않아서 본인에게 재산세 고지가 발부 되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집을 매도하고 사실상 잔금을 전부 받았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매매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매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사례: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질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반떼 자동차를 2011.10.10 폐차 말소 하였음 자동차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 1기분은 6월말, 2기분은 12월 말에 납기가 됩니다. 따라서 10월 10일에 폐차 말소하였다면 1월~6월까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6월말에 납부하여야 하고, 7월 1일~폐차말소일인 10월 10일까지 사용분 자동차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사례: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혜택]

<질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어떤 경우 감면이 되나요?

-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인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요건에 맞는자)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단, 면제받은 차량은 1년 이내(사망, 혼인, 해외이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경우 제외)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공동 등록한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정되며, 자동차세는 공동 등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할 경우 그 시점부터 부과됩니다.

[사례: 도난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질문> 2013년 자동차를 도난 당해 당시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왜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나요, 그리고 차량도 없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도난 등으로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자동차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도난 차량의 경우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기간에 제출하면 도난신고일 이후 과세된 자동차세는 감면처리하고 부과유예 등을 해 드립니다. 단 이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차량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동안 감면 처리 된 자동차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 주민세(개인분)]

<질문> 직장에서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를 매달 납부하는데 8월 달에 10,000원짜리 고지서가 집으로 또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 매달 직장에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며,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모든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는 그 종류가 다르므로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8,000만원)을 하고있는경우라면 사업소분 주민세도 부과 됩니다.

[사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질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세액의 10%) 단, 부동산 양도 한 날 (잔금지급일)그 달로부터 2월 이내 신고 납부 시 10% 공제됩니다.

[사례: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대상자]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민세를 납부 하여야 하나요?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세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이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올해 주민세는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례: 매매 계약 해지할 때 취득세]

<질문>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후 잔금 지불 전에 구청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매해약을 한 경우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 ☞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구청 부동산 실거래 신고 창구에서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증을 제출하면 부과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면 부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어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례: 상속취득 후 이전등기를 못한 경우의 취득세]

<질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세 환부가 되는지요?

-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상속받은 지분만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VII. 유익한 세금상식

1. 구제제도
2. 지방세 절세요령
3.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4. 납세증명서 등 발급안내
5. 부동산의 과세표준
6. 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

① 구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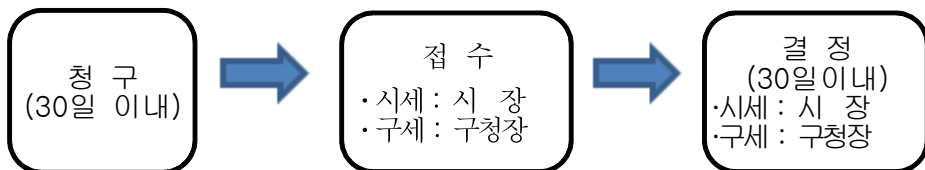
과세기관으로부터 지방세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조세를 부과한 행정기관, 감사원, 조세심판원, 법원에 그 피해구제 내지는 예방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지방세 부과에 관한 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과세 전에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여 사전에 구제받는 제도

- 심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심사청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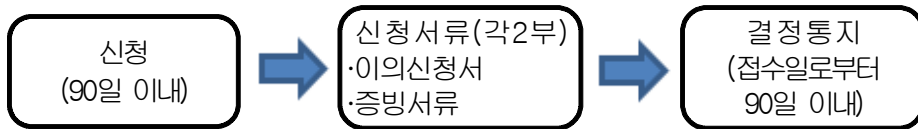
- 청구효과
 -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유보함

2. 이의신청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신청하는 구제제도

○ 이의신청절차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 계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도 가능



3.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제출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 제출처 :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

4. 감사원 심사청구

위법·부당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

- 제출서류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음

5. 행정소송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만 가능(2021년부터)
- 행정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제2심은 고등법원, 제3심은 대법원이 관할함

② 지방세 절세요령

▣ 세금은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하며,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가산금의 추가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 신고납부 세목은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중여 3개월, 상속 6개월)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매월 10일
 - 주민세(사업소분) : 8. 1 ~ 8. 31
 - ※ 납세의무자가 주민세(사업소분)을 납부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부과되는 지방세 고지서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3%)이 추가되고 체납된 세금은 매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0.66%)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기를 지켜 해당월 말일 안에 납부하게 되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개인분)(8월)

▣ 부동산 양도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주의하자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 일로 정하여 이날 현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 과세기준일(6월 1일)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양도해야 당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납세의무가 없다.
 - ※ 여기서 양도란 실제로 잔금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을 양도일로 본다.

▣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4.6%를 적게 낸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대금으로서 1월~6월까지 사용분인 제1기분은 6월에, 7월~12월까지 사용분인 제2기분은 12월에 납부 하고 있으나, 연간 납부할 세액을 선납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선납 시 연세액 공제율 : 1월(4.6%), 3월(3.8%), 6월(2.5%), 9월(1.3%)
 - ※ 선납방법은 구청에 전화 신청, 방문하여 고지서를 받아 납부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자.

월요일 ~ 금요일(토·일·공휴일 제외) 중 원하는 하루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5% 감면 혜택(문의처 : 북구 교통행정과)

③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
-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1. 전국금융기관 CD/ATM → 지방세공과금 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
 2. 카드종류 : 국내 모든 신용카드
 3.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 900원 부과
 4. 타인 건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필요
- 지방세 인터넷 포털사이트 위택스 납부
 1. 위택스 사이트 접속(<http://www.wetax.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 조회납부 선택 → 고지조회 선택 → 본인고지조회 선택 후 검색 → 상세보기 선택 후 전자납부
 3. 이용가능 시간 : 07:00 ~ 23:30(365일 가능)
 4. 카드납부시 할부 수수료는 해당 신용카드로 문의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납부
 1.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접속
 2. 고객납부용 인터넷지로 선택
 3. (회원가입후) "로그인"버튼을 클릭
 4. 상단의 메뉴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클릭
 5. 행정구역선택(시·군·구청)
 6. 주민등록번호(간편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부
- 가상계좌 이체
 1. 납세고지서에 적혀있는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타행 입금시 수수료 별도)
 2. 가상계좌는 1인1계좌로 납세자 본인의 고유계좌이기 때문에 입금받는 분이 납세자 본인이름으로 나옴
 3. 누구나 입금하여 타인세금 대신납부 가능
 4. 이용시간 : 00:00 ~ 23:30(365일 가능)
- 자동계좌 이체신청
 1. 자동계좌 이체신청 : 500원 세액공제
 - 전자송달과 함께 자동계좌이체 신청 : 1,000원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위택스(전자신청)
- 지방세 ARS(142211) 전화납부
 1. 고지서 없이 연중 24시간 ARS 무료전화 한통화로 지방세 간편납부
 2. 신용카드(비씨, 국민, 현대, 신한, 삼성, 롯데, 농협, 하나, 씨티, 광주, 전북)결제
 3. 휴대폰소액(10만원미만) 결제(수수료 본인부담)
 4. 과오납금 환부신청(환부계좌입력)도 가능

4 납세증명서 등 발급안내

▣ 제증명 종류 및 발급절차

구 분	발 급 내 용	발급부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체납액 또는 과세실적이 없거나 징수유예 사항을 증명	세무2과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사실 없음】	지방세의 납부여부 및 과세여부를 확인 ※ 전국 또는 광역시·도 복수 선택하여 1장으로 발급처리 가능(서울시 제외)	

※ 타인(가족포함)으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의 위임장과 위임 받는자(대리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위임장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지방세납세 증명 (발급통수:) <input type="checkbox"/>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발급통수 :)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세납세증명서 (발급통수 :)				
위임하는 사람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일자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부동산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 부동산 가액은

- 부동산을 과세하는 세법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다.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으로,
 -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명칭
- 세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과세표준액 적용기준은 다르다.
 - 재산세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며,
 -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비교하는 기준금액

■ 토지에 대한 가액 :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 : 적용법령 또는 운용주체에 따라 다양함

- 국세청고시 기준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 실거래가격 등
- 환경개선부담금·건강보험료·사용료 등의 산출시 준용하는 기관도 다양

■ 부동산의 과세표준

과세물건별		과표산정 기준	공시 주체	정기 공시	비고
토 지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2024.04.30.	
건 물		시가표준액/기준시가	시장·군수·구청장/국세청장	2024.06.01	
주택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2024.04.30.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2024.04.30.	

※ 건물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 82만원, 상업 81만원, 공업 80만원)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가율 ×
 건물면적 × 가감산특례

참고) 국세청 기준시가 ?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액

⑥ 주택가격 공시제도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 주택 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 근거 및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제공·활용

■ 2023년 공시현황

- 2023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국토교통부) : ‘23. 1. 25.
-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7,354호) : ‘23. 4. 28.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60호) : ‘23. 9. 25.

■ 2024년 공시일정

- 기타물건(건축물 제외) 시가표준액(기초자치단체) --- ‘24. 1. 1.
- 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교통부) ----- ‘24. 1. 25.
-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국토교통부) ----- ‘24. 1. 25.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기초자치단체) ----- ‘23. 4. 30.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기초자치단체) ----- ‘23. 4. 30.
- 건축물 시가표준액(기초자치단체) ----- ‘24. 6. 1.

■ 참 고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 : ‘24. 4. 30.
- 1㎡당 가격이 아니라 주택의 건물과 부속대지를 일괄 평가한 가격임

▣ 부 록

1. 지방세·국세 문의전화
2. 기업지원 시책안내
3. 기업지원 관련 문의전화
4. 납세자 권리현장
5. 징수·부과행정서비스 현장
6. 지방세 관련서식

1 지방세·국세 문의전화

▣ 지방세 분야

- 북구 세무1과 : 대표전화 (052) 241-7550, 팩스번호 241-7509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우44248]

담당별	주요업무	전화번호
세정담당	세정기획, 과오납환부, 구 금고 관리	241-7501~4
취득세담당	취득세, 자동차세 부과	241-7511~7
재산세담당	재산세 부과	241-7521~5
과표담당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무조사	241-7541~4

- 북구 세무2과 : 대표전화 (052) 241-7504, 팩스번호 241-7519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우44248]

담당별	주요업무	전화번호
체납세관리담당	체납세 징수총괄 및 기획 시책추진	241-8541~4
세외수입담당	세외수입 체납관리, 재산압류	241-7526~8
통합징수담당	체납세,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납세증명발급	241-7531~4
지방소득세 담당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	241-7546~8

▣ 시 및 구·군

-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 ☎ (052)229-2621~6(세정), 229-2631~3(세무조사)
- 중구 세무1과, 세무2과 : ☎ (052)290-3352~4(세무), 290-3383(세무조사)
- 남구 세무1과, 세무2과 : ☎ (052)226-3520~4(세정), 226-3570~3(세무조사)
- 동구 세무1과, 세무2과 : ☎ (052)209-3261~4(세정), 209-3297(세무조사)
- 울주군 세무1과, 세무2과 : ☎ (052)204-0511~5(세정), 204-0651~4(세무조사)

▣ 국세 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126
- 울산세무서 ☎ (052) 259-0200
- 동울산세무서 ☎ (052) 219-9200

▣ 세금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명	홈페이지 주소	주요 내용
울산 북구청	http://www.bukgu.ulsan.kr/ “전자민원 → “지방세”클릭	세목별 설명, 납부시기 및 감면
위택스	http://www.wetax.go.kr/	지방세안내, 사례 등
국세청	http://www.nts.go.kr/	국세 자료, 상담 등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령, 행정심판 자료
지방세연구원	http://www.kilf.re.kr/	지방세 연구보고서

② 기업지원 시책안내

< 복구 기업지원 및 노사민정협력 사업 안내 >

● 복구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운영목적	노사민정이 함께 고용, 노동 및 경제현안 등 발전방안 모색
운영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성 일 시 : 2007. 1. 16. • 협의회 위원 : 25명(노동, 기업, 주민, 정부기관 대표·관계자)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 지역 노사관계 발전 사업 등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4, FAX 241-7709)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목적	소상공인 대출의 이자차액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지원규모	100억원 정도
지원대상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2년간, 2%) • 대출한도 : 업체별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 상환, 금리상한제(3.5% 이하)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02, FAX 241-7709) 울산경제진흥원 (☎ 283-716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 대출의 이자차액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지원규모	150억원 정도
지원대상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분류번호 C)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2년간, 3%) • 대출한도 : 업체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 상환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3, FAX 241-7709) 울산경제진흥원 (☎ 283-7161)

●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사업목적	관내 신설·증설·이전하는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으로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신규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4개 분야 재정지원 				
		구 분	분 야	내 용	한 도
	일반지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입지, 시설 확보를 위한 융자금 이차차액 보전금 지원	기업당 5천만원
			고용보조금	신규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	3천만원
			전기요금 지원금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	1천5백만원
	판로개척 지원금	판로개척을 위한 박람회 등 임차료, 시설비 지원금	1천만원		
특별지원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신규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3, FAX 241-7709)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 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으로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
지원대상	관내 본사, 공장, 연구소를 가동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국내외 특허인증 및 R&D 역량강화 멘토링 지원 등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3, FAX 241-7709) 울산테크노파크 (☎ 219-8525)

● 공장설립 및 기타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행정 지원

운영목적	공장설립 및 기타 기업 애로사항 접수연계 처리로 원스톱 행정 지원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록(승인) 관련 신청서류 작성,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 기타 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5, FAX 241-7709)

● 부품사 기술전환 지원

사업목적	자동차부품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술전환 지원으로 미래차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관내 기술전환을 희망하는 자동차부품기업
지원내용	미래차 부품전환 준비단계 / 실행단계 구분 지원 각 단계별 기업컨설팅 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3, FAX 241-7709) 울산테크노파크 (☎ 219-8525)

● 스타 비즈니스 센터(Star Business Center) 운영

사업목적	(예비)창업 기업의 시작과 도약을 위한 창업공간 운영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규모	15개사 정도(예비 스타기업 5개사, 1인 기업 10개사)
지원내용	사업공간 제공(매곡산단 내)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3, FAX 241-7709) 울산테크노파크 (☎ 219-8525)

③ 기업지원 관련 문의전화

- 울산광역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052) 229-2790~3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기업투자담당 (052) 241-7711~5
 경제일자리과 청년정책담당 (052) 241-7716~8
- 관련 기관·단체 현황

기관 · 단체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10-0011	283-0354	경제진흥원내
울산 경제진흥원		283-7171	700-7135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070-8895-7884	0502-8895-7884	
달천농공단지임주기업협의회		282-7900	282-6236	
매곡일반산업단지협의회		219-4680~1	219-4682	
모듈화일반산업단지협의회		283-2380	289-0125	
중산일반산업단지협의회		716-2310	070-4369-3057	
울산지식산업센터협의회		287-0744	287-0746	
울산신용보증재단		289-2300	289-8964	경제진흥원내
신용보증기금 울산복지점		1588-6565	290-7999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		220-7900	220-7901	경제진흥원내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1588-3884	261-1837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287-3060~1	287-3062	경제진흥원내
한국표준협회 울산지부		289-6601	289-6604	경제진흥원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59-1127	259-106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센터		260-6388	260-2472	
(재)울산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19-8565	219-8559	
	기업지원단	219-8643	219-8509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219-6608	219-6699	매곡산단내

납세자 권리현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자치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현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징수 행정서비스 현장

1. 서비스 이행기준

○ 체납관리 행정서비스

- 지방세 체납징수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고 체납액 상설징수팀을 운영하겠으며,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을 연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체납세 납부를 편리하게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카드, 카드론, 지로, 인터넷 등 매년 확대 시행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신청시에 즉시 확인하여 3분이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2. 민원사무의 신속처리

- 다음 민원사무를 이행목표 처리기간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명	법정처리 기 간	실제처리 기 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수수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즉시(3시간 이내)	10분	7분	800원
지방세 납세증명	즉시(3시간 이내)	10분	7분	-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	7일	5일	4일	-

3. 서비스 분야별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분야	접수·처리담당	전화번호	FAX번호
지방세부과	지방소득세주무관	241-7547	241-7519
체납관리	체납관리주무관	241-7531	

부과행정서비스 현장

1. 서비스 이행기준

○ 세입관리 행정서비스

-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부 받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문 발송 및 확인 전화를 통하여 조기에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 신청시에도 신속하게 지급하겠으며, 미환부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분기별 1회 이상 재통지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관리업무 안내】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전자민원→지방세→지방세 환급금

○ 지방세부과 행정서비스

-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방법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인터넷납부제도, 자동이체 납부제도 등의 제도를 매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북구 홈페이지내 세목별로 안내하고 입간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세목별지방세 안내】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전자민원→지방세→세목별 안내

○ 세무조사 행정서비스

- 세무조사 통지서를 10일전 발송에서 15일전 발송으로 조기 발송하여 피 조사기관의 부담 완화 및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종업원 20인, 면적 330㎡ 이하)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주택가격관리 행정서비스

-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개별주택 선정과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열람】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전자민원→지방세→주택공시가격 열람

2. 민원사무의 신속처리

◦ 다음 민원사무를 이행목표 처리기간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	실제처리기간	이행목표처리기간	수수료
취득세 신고납부	즉시(3시간 이내)	20분	15분	-
지방세감면	5일	30분	20분	-
지방세 기한연장(승인) 신청	7일	5일	4일	-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30일	30일	30일	-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즉시(3시간 이내)	10분	7분	800원
세무조사 연기	7일	5일	3일	-

3. 서비스 분야별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분야	접수·처리담당	전화번호	FAX번호
지방세부과	재산세주무관	241-7521	241-7509
	취득세주무관	241-7511	
세입관리	세정주무관	241-7502	
세무조사 주택가격관리	과표주무관	241-7541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납세자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당초 조사기간	~	
연기신청 조사기간		
연기신청 사유 (내용이 많은 경 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세무조사 연기를 받으려는 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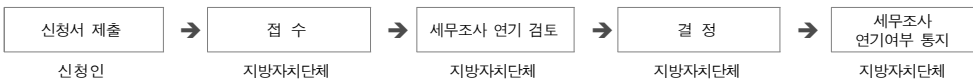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연기신청 조사기간은 연기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조사기간을 기재합니다.
- 연기신청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유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통지기관	통지받은 연월일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내용

세목	과세대상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세			신청세액
				계	산출세액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승문 없음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기한 내 / []기한 후)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input type="checkbox"/> 기타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 (지목/차종)	용도	취득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세액	② 감면세액	③ 기납부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계 (①-②-③+④)
						신고불성실	납지연	부계	
합계									
신고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리인

접수(영수)일자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수수료 없음
------	----------------------------------------------------------------------------------------------------------------------------------------------------------------------------------------------------------------------------------	--------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0. 12. 31.>

주민세 사업소분 ([]기한 내/[]기한 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 번호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⑤ 사업소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20 년 신고납부 내역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⑩ 과세제외 면적	⑪ 과세대상 면적(=⑨-⑩)
m ²	m ²	m ²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한 상세내역

⑫ 구분	⑬ 자가/임차	⑭ 명칭(층, 호수)	⑮ 용도	⑯ 면적(m ²)	⑰ 과세/과세제외

납부할 세액

세 목	과 세 표준액	세 율	산 출 액	감 면 세 액	⑱ 가산세			⑲ 신고세액 합 계
					무신고 또는 소신고	과 납부 지연	계	
합 계								
주민세	⑳ 기본세액							
	㉑ 연면적에 대한 세액							
㉒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을 적은 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자르는선

접수증

(접수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18. 12. 3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	------	------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본점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⑨ 종업원 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과세표준		
			⑪ 급여총액	⑫ 과세제외급여액	⑬ 과세급여총액
	인	원	원	원	원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⑬ / ⑨)	⑯ 과세표준 공제액 (⑮ × (⑨ - ⑭))
인	원	원

납부할 세액	⑰ 산출과표 (⑬-⑯)	원	⑱ 산출세액 (⑰×0.5%)	원	무신고가산세	원
	⑳ 신고세액합계 (⑰+⑱)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지연가산세	원
					⑲ 가산세 합계	원
					원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납세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성명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급여 총괄표

납세 의무자	사업소명(상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 지 기재)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2000년 월분 급여 합계(급여지급일: 2000년 월 일)

과 세 대 상		비과세대상		비 고
구 분	급여액	구 분	급여액	
기본급		기본급		
수 당		수 당		
상여금		상여금		
기 타		기 타		
합 계		합 계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신고월(급여지급일이 속한 달) 이전 최근 12개월간의 월급여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월별	평균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신고월
급여 총액													

직전 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업 원수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세액 등을 기재)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연월일(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⑦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없음

위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심판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증질지(80g/m²)]